

| | | | | |
|--|--------------|------------------------|------------|--------------------------------|
|  보건복지부 | | <h1>보 도 참 고 자 료</h1> | | |
| 배 포 일 | | 2020. 9. 13. / (총 18매)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팀 장 담 당 자 | 박 은 정 한 연 수 | 전 화 | 044-202-1711 044-202-1714 |
|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 과 장 담 당 자 | 김 성 훈 박 현 수 | | 044-200-2293 044-200-2295 |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과 장 담 당 자 | 김 정 일 유 효 연 | | 02-2113-7660 02-2133-7669 |
|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 단 장 담 당 자 | 안 광 찬 이 은 실 | | 032-440-7801 032-440-7849 |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과 장 담 당 자 | 윤 덕 희 최 문 갑 | | 031-8008-5420 031-8008-5422 |
|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 팀 장 담 당 자 | 김 정 숙 이 성 경 | | 044-202-1720 044-202-17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가올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민간 유관기관·단체 등이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여 방역에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코로나19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과 병행하여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조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 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53.9명까지 증가하였던 1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전(8.30. ~ 9.5.)에는 **162.1명**으로 낮아졌고, 지난주(9.6. ~ 9.12.)는 **98.9명**으로 더 낮아졌다.
 - 오늘(9.13.)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0명**으로 감소하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 8.16. ~ 8.22. | 8.23. ~ 8.29. | 8.30. ~ 9.5. | 9.6. ~ 9.12.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68.4명 | 331.0명 | 218.4명 | 134.6명 |
| 수도권 | 224.3명 | 253.9명 | 162.1명 | 98.9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12.0명 | 11.6명 | 11.6명 | 14.7명 |
|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 36건 | 40건 | 24건 | 11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12.4 (%) | 21.3 (%) | 18.3 (%) | 28.8 (%)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 80% 미만 | 80% 미만 | 80% 미만 |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 가능

-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
 - 이제부터는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어,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다만,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인된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31명으로 이전 2주간(8.16.~8.29.)의 239명에 비해 108명 감소하였다.
 - 수도권 외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45.5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16.~8.29.)에 비해 15.2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 8월 16일 ~ 8월 29일 | ⇒ | 8월 30일 ~ 9월 12일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99.7명 | | 176.5명 |
| 수도권 | 239명 | | 131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11.8명 | | 13.1명 |
|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 76건 | | 35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17.3% (754/4361) | | 22.4% (596/2655)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 80% 미만 | |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덕분이라며, 불편과 고통을 참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밝혔다.
- 다만,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을 최소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 계속해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개 한강공원(여의도·뚝섬·반포)의 24시간 통제 유지, 매점·카페, 주차장 등 21시 이후 영업중단 이행사항과 공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해 의무설치시설을 중심으로 QR코드 설치 방법,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라디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QR코드 이용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일(9.14.)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수기명부 관리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교통분야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내일(9.14.)부터 10월 4일까지 주요 환승역의 열화상카메라 운영 실태, 방역물품 비치 상황 등 지하철과 역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 시내버스에 대해 소독 및 차량 내 대화 자제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9월 21일부터는 택시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작성, 차량 내 방역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할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하였으며, 현재까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자원봉사자 1,087명이 지원하였다. 이 중 73명을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국군수도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수도권 국내 발생 신규환자 : (8.21) 244명 → (8.27) 313명 → (9.2) 187명 → (9.5) 112명 → (9.8) 98명 → (9.11) 116명 → (9.12) 86명 → **(9.13) 60명**
- ** 수도권의 주평균 신규 확진자 : 지난 주(8.30~9.5) 162명, 이번 주(9.6~9.12) 99명

-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 ①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

| | | | |
|--------------------|--|--|--|
|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 |

○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 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 시설 | 기존 방역 조치 | 조정방안(안) |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교습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②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③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1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11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251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1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람이 없었다.

□ 9월 1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만6565개소, ▲실내체육시설 2,583개소 등 38개 분야 총 4만8206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명부 작성 등 6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만459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449반, 1,61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2. PC방 핵심 방역수칙 (전국)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자료 >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 이상)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

| | | | |
|--------------------|--|--|--|
|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 |

□ 실내체육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li style="margin-left: 20px;">*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붙임2

PC방 핵심 방역수칙 (전국)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붙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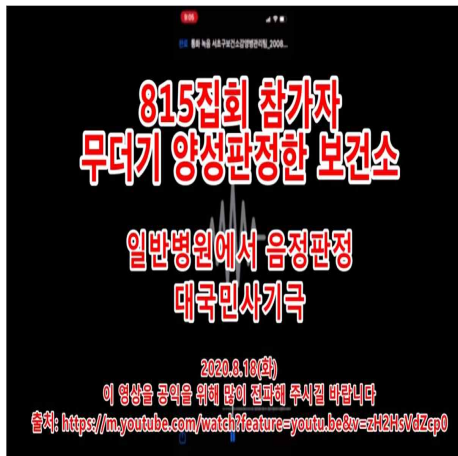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오전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